

# 서울특별시장 ·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

의안 번호	921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09년 6월 11일

발 의 자 : 진두생 의원 외 14인

## 1. 주 문

제21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주요안건을 처리하고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·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별첨과 같이 요구합니다.

## 2. 제안이유

주요안건을 처리하고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·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임.

## 3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42조
-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70조

## 서울특별시장 ·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

제21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·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.

- 출석일시 : 2009. 6. 22(월). 7.7(화) ~ 7.10(금). <5일간>
- 출석장소 :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
- 출석이유 : 주요안건 처리와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

### [ 서울특별시 ]

서울특별시장, 부시장(3), 실·국·본부장, 지방공사 및 공단사장, 출자·출연법인의 임원, 지방자치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 및 답변에 필요한 3급 이상 공무원 등 「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수 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」에 규정된 자

### [ 서울특별시교육청 ]

서울특별시교육감, 부교육감,

실·국장 및 답변에 필요한 3급 이상 소속 공무원